

ECB, 11.1일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준비단계(preparation phase) 착수

□ ECB는 **디지털 유로*** 프로젝트의 **조사단계**(investigation phase, 2021.10월~23.9월)를 **완료**하고, **2023.11월부터 향후 2년간의 준비단계**(preparation phase)에 **착수**

* 유로시스템(ECB 및 20개 유로지역 회원국 중앙은행)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

○ **조사단계**에서는 디지털 유로의 **설계(design)** 및 **유통(distribution) 모델**을 탐색하기 위한 **조사 및 기술 검증, 규정집(rulebook) 작성** 등을 수행*하였으며, 이 과정에서 사용자 및 유로시스템의 요구사항**을 충족하는 **시스템 개발이 가능함을 확인**

* 자세한 내용은 「<참고>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조사단계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」 참조

** 개인정보보호, 금융 포용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

— 디지털 유로는 **수 유로지역**에서 개인간 거래, 전자상거래, 정부와의 거래 등 다양한 **전자거래(P2P, POS, E-commerce, G2X 등)**에 대해 **온라인과 오프라인**에서 **무료로 제공**되며, **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포함**하도록 설계

— **은행 등 중개기관을 통해 디지털 유로를 최종 이용자에게 유통**하는 방식이며, 서비스 제공은 유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**디지털 유로앱** 또는 **지급 서비스제공기관(PSP)의 자체앱에 디지털 유로 기능을 통합**한 방식을 고려

○ **준비단계**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**규정집을 마무리**하고, **플랫폼과 인프라의 개발 공급자 선정** 등 잠재적인(potential) **디지털 유로 발행***을 위한 **기반을 마련**할 계획

* **디지털 유로 발행**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**결정된 바는 없으며**, ECB는 디지털 유로 발행 결정은 EU의 **관련 입법절차#**가 **완료된 후에야 고려**할 수 있다는 입장

EU 집행위원회는 2023.6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채택할 입법 제안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유로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

— 또한, 디지털 유로 개발을 위한 **테스트 및 모의실험**도 포함

□ **준비단계 이후 일정은 미정**이며, **다음 단계로의 이행**은 향후 준비단계 완료 시점에 **ECB 정책위원회(Governing Council)에서 결정**할 계획

<참고>

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조사단계(investigation phase)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

1 디지털 유로의 특성 및 도입 필요성

- 디지털 유로는 전자지급결제 **의 편리함**에 더해 현금과 같은 **법정통화(legal tender)로서의 공공재 성격(서비스 무료)**을 가지며, 디지털 유로가 도입된다면 현금 및 다른 전자지급수단과의 병존이 가능하므로 **최종 이용자의 지급방식 선택폭이 확대**
 - **(보편성) 유로지역 전역에서 모든 소매지급**(개인간 거래, 전자상거래, 정부와의 거래 등)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
 - **(안전성) 유럽 거버넌스 하에서 범유럽 지급결제인프라를 자체 구축**함으로써 사이버 공격,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**복원력(resilience) 강화***를 도모
 - * IT 발전 등으로 전자지급 거래가 확산되면서 외국계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심화
 - **(포용성)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**(디지털 유로앱 개발 등)을 통해 노인 등 디지털 기기 작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**손쉽게 이용**토록 하는 한편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**오프라인 거래를 통해 이용*** 가능
 - * (예)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실물카드를 통해 디지털 유로 서비스 이용 가능
- 상인 등 **판매자** 또한 **지급거래 프로세스의 간소화**를 통해 **거래비용을 절감***할 수 있으며, 즉시 지급되므로 현금처럼 **자금수취가 실시간 가능****
 - * 이에 따라 판매자는 민간 지급서비스제공기관(PSP)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음
 - ** 유로지역의 경우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(TIPS)이 이미 운영되어 실시간 자금이체가 가능하나, 최종 이용자는 동 서비스 이용 시 은행 등에 이체수수료를 납부
- **(익명성) 개인정보와 거래내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(AML/CFT) 등 관련 법령 이외는 접근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***
 - * 특히, 디지털 유로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민간기관과 달리 상업적이지 않고, 개인 각각의 지급패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지 않으며, 반드시 저장되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명 처리

- 최종 이용자가 지급서비스제공기관(이하 'PSP')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 개인정보 제어 권한을 최종 이용자에게 부여
- 특히, 오프라인 지급거래의 경우 단순히 지급인과 수취인의 직접 이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금과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
- (지급서비스의 혁신 촉진) PSP는 표준화된 범유럽 플랫폼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·제공할 수 있게 되어 비용 절감, 효율성 제고, 혁신 촉진을 도모할 수 있음
- 디지털 유로의 상호운용성(interoperability)을 통해 잠재적으로 은행과 비은행 PSP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창출하고 결제 산업의 혁신을 도모

2 디지털 유로 설계(안)

- (이용 대상) 현재까지의 유럽의회 제안서*에 따르면 유로지역 거주자, 유로지역 내 설립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디지털 유로를 보유할 수 있고 지급거래**가 가능

* 「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establishment of the digital euro」의 13항 참조

** 또한, 유로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유로지역 국가의 시민도 해당 시점에 거주자가 아니어도 유로지역에서 지급계좌를 개설할 권리가 있는 경우 디지털 유로 접근이 가능

- 비유로지역 거주자에게 디지털 유로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거나 더 넓은 가용성을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 유로 도입 이후 다음 단계에서 고려
- (최초 등록) 최종 이용자는 유로시스템이 아닌 PSP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 유로 계좌(DEAN; Digital Euro Account Number) 개설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
- (지급거래 방식)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
- 온라인 방식은 중앙은행 자금(central banking money)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지급거래에 대해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원격에서 이용이 보장

- **오프라인 방식**은 현금처럼 매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며,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으나 **사전에치금*(prefunded)을 통한 근접 지급거래**만 가능

* 결제자금을 사전에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

- 지급거래 과정에서 **PSP를 통한 제3자 검증**은 **온라인 방식**은 필요하나, **오프라인 방식**은 로컬(지급인과 수취인의 장치)에서 결제되므로 **불요**

- 오프라인 방식은 **장치별(per device) 디지털 유로 보유한도가 적용**

* 장치별 보유한도는 개인 총 보유한도의 하위개념으로 총 보유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

- 디지털 유로가 저장된 **전자지갑(wallet) 장치(스마트폰 등)**가 분실된 경우 해당 장치의 디지털 유로는 유로시스템 또는 PSP를 통해서 **복구될 수 없음**

디지털 유로의 개인 보유한도 제한

- 유로시스템은 디지털 유로 도입 시 금융안정이나 통화정책 파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인 보유한도*를 제한

* 보유한도 규모는 최신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 유로 도입의 근접 시점에서 결정

- 이는 보유한도 제한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련 위험, 은행 자금조달 등 **은행예금에서 디지털 유로로의 급격한 이동**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**위험을 완화**하기 위함

- 또한, 지난 수십년간 유지된 **은행예금과 중앙은행 화폐간 건전한 균형을 유지**

- (서비스 인터페이스) **이용자 앱, 실물카드**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

- 유로시스템이 제공하는 **디지털 유로 앱** 또는 **기존 PSP 앱에 디지털 유로 서비스 기능을 통합**한 방식 등을 고려

- 상점 등 **비즈니스 이용자**에게는 POS 및 전자상거래 등을 위한 **결제승인 솔루션**을 제공

- (디지털 유로와 다른 지급수단간의 교환) 디지털 유로는 은행예금과 현금으로 교환 가능
 - 은행예금과의 상호교환을 위해서는 하나의 은행예금 계좌를 사전등록하여 디지털 유로 계좌와 연결(link)시켜야 하며,
 - 이를 통해 자금수취 시 디지털 유로 보유한도 초과, 자금지급 시 디지털 유로 계좌 잔액 부족 등의 경우에도 결제 실패 없이 지급 및 수취가 가능
 - 보유한도 초과금액은 연결된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(waterfall functionality) 되고, 반대로 결제 부족액은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부족액만큼 즉시 이체 (reverse waterfall functionality)
 - 연결된 은행계좌와의 자동교환 기능은 온라인 거래에서만 가능
 - 현금과의 상호교환은 연중무휴 이용가능한 은행예금과는 달리 PSP의 현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불가
- (디지털 유로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) 현재까지는 도입취지(현금을 보완할 목적)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유로에 대한 이자지급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

3 디지털 유로 서비스 제공자(PSP, 유로시스템)의 역할

- 디지털 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며, 최종 이용자는 PSP를 통해 디지털 유로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나,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유로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PSP가 아닌 유로시스템의 부채*로 인식
 - * 은행예금의 경우 유로시스템이 아닌 해당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은행의 부채로 인식
 - (PSP) 디지털 유로의 유통 과정에서 최종 이용자의 디지털 유로 계좌 개설 및 관리(해지 포함), 지급수단 관리(모바일 앱, 실물카드 등), 디지털 유로 계좌와 은행 계좌와의 연결을 통한 유동성 관리 지원, 이용자간 분쟁관리 등을 담당
 - 또한, 유로시스템을 대신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점검 업무도 수행

- (유로시스템) PSP가 최종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**안전한 결제인프라를 제공**하는 한편 디지털 유로 관련 **제도 규정집 등을 제공**

— 디지털 유로를 **발행**하고 지급거래를 **즉시 결제**하며,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**디지털 유로앱**을 제공하고 관리

디지털 유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PSP 및 유로시스템의 역할



4 평가 및 향후 계획

-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조사단계를 통해 설계 및 유통 관점에서 사용자 및 유로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**디지털 유로의 개발이 가능함**을 입증
- ECB 정책위원회는 조사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인 **준비단계(preparation phase)**를 **2023.11월부터 2년간 착수**하기로 결정
 - 준비단계에서는 **추가 테스트 및 모의실험**에 초점을 맞추고 사용자 및 유로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**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지속**할 계획
 - 준비단계 이후의 **후속단계**에 대해서는 준비단계 결과와 입법 과정의 진전 등을 기초로 하여 **2년 후** ECB 정책위원회에서 **결정**할 예정